

이사회 운영 규정

제정 2020.08.05. 규정 제0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(이하 “복지재단”이라 한다)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 이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내용 청취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사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
제5조(이사회 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한다.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정관 제2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④ 이사회 의 소집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 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7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- 8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 - 9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 - 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- 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②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·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7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, 다만,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찬성으로 의결하여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의안은 제안 설명, 심의 표결 순으로 처리한다.

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.

④ 의안은 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심의보류로 구분 의결하며,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, 심의보류 동의를 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.

⑤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대리인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심요청) ① 의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,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, 필요시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임·직원의 출석)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·직원에게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부의절차) ① 이사회 의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
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이사회 부의안건 [별지 제3호 서식]을 작성한 후,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운영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 운영 주관부서는 의안의 접수 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 [별지 제4호 서식]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,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부여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의안설명)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소관부서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이사회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서면의결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② 서면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통지하고 의결서 [별지 제5호 서식]에 의견을 받아 의결한다.
③ 서면의결에 의한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사록 작성·보존) ①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 [별지 제6호 서식]을 작성하여 이사장,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 의사록, 서면결의서 및 부의원안은 이사회 운영 주관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.

제14조(의결사항 통보)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담당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 [별지 제7호 서식]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이사회 사무관리) ①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이사회 운영 주관부서의 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.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1.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
3.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16조(이사회 참석수당) 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」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,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이사회 소집통지서

수 신 :

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제 ○○회(정기, 임시)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- 1. 일 시 : 20
- 2. 장 소 :
- 3. 의 안 :

의안번호	의 안 제 목	소관부서

4. 내 용 : 별 첨

20 년 월 일

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 (인)

(별첨)

제 회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회 상정안건

1. 보고사항

가.

1)

가)

2. 심의안건

가.

1)

가)

위 임 장

본인은 다음의 소속 직원에게 제 회 이사회(20 . .)에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 함.

대 리 인

직 위 :

성 명 : (인)

년 월 일

위 임 자 (인)

직 위 (인)

성 명 (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년 월 일	20 . . . 제 차 (정기·임시회)

안 건 명

제 안 자	
제안년월일	20 . . .
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	

안 건 명

1. 의결주문

2. 제안이유

3. 주요골자

4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나. 예산조치

다. 합 의

라. 절 차

마. 기 타

제 회 [정기 · 임시] 이사회 서면결의서

안 건 명 :

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서면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 (인)

성 명 (날 인)	찬 성	반 대

제 회 [정기 · 임시] 이사회 회의내용

1. 회의개요

- 가. 회 의 명 : 제 회 (정기·임시) 이사회
- 나. 기 관 명 : 재단법인 남양주시 복지재단
- 다. 일시 및 장소
- 라. 출석 현황 : 재적이사 00명, 참석이사 00명
 - 1) 재적이사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 - 2) 출석이사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 - 3) 감 사 : ○○○, ○○○
 - 4) 배 석 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- 마. 안건목록

의안번호	건 명	의결내용

2. 논의결과

- ① 의안번호 ○○호

가. 안건 주요내용

- 1) ...
- 2) ...

나.참석자 발언요지

- 1) ...
- 2) ...

다. 논의결론 :

- 1) ...
- 2) ...

이사회 심의결과 통보서

수 신 :

참 조 :

제 회 이사회(년 월 일)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 합니다.
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 명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의결과 :			
20 년 월 일			
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			